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81 발의연월일: 2025. 3. 20.

발 의 자:김태선·김남근·박홍배

정준호 • 이학영 • 윤종군

한민수 • 박 정 • 김태년

박해철 • 맹성규 • 윤준병

이용우 · 김주영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행정기본법」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·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게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,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,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'재심사', '재검사', '재심사'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, 합리적인 사유 없이 「행정기본법」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한 · 연장기한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, 처리기한 · 연장기한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.

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「행정기본법」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64조의6제3항).

법률 제 호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4조의6제3항 중 "20일"을 "30일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이의신청에 대한 재심 청구에 관한 적용례) 제64조의6제3항의
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의신청 조치결과를 통지받는 경우부
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4조의6(이의신청) ① • ②	제64조의6(이의신청) ① • 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이의신청 조치결과에 대하	③
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	
를 받은 날부터 <u>20일</u> 이내에	<u>30일</u>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	
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5조	
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	
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	
할 수 있다.	
④ · ⑤ (생 략)	④ · ⑤ (현행과 같음)